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(서명옥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396 발의연월일: 2024. 11. 8.

발 의 자:서명옥·박준태·서천호

김예지 • 주호영 • 유상범

배준영・박정하・조정훈

김미애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보호 및 사례 관리를 위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아동학대행위자 및 관계인 에 대하여 출석·진술 및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 음.

그런데 실질적인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해서는 아동학대행위자 및 관계인이 출석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는 불충분하고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직접 피해아동의 가정에 방문하거나 전화 상담을 통해 실상을 파악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제기됨.

이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조사의 수단으로 가정방문, 전화상담을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(안 제11조의2제1항 및 제3항).

법률 제 호

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1조의2제1항 후단 중 "출석"을 "가정방문, 전화상담, 출석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"제17조"를 "제11조, 제17조"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조사에 관한 적용례) 제11조의2제1항의
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아동학대행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1조의2(조사) ① 아동학대전담	제11조의2(조사) ①
공무원은 피해아동의 보호 및	
사례관리를 위한 조사를 할 수	
있다. 이 경우 아동학대전담공	
무원은 아동학대행위자 및 관	
계인에 대하여 <u>출석</u> ·진술 및	<u>가정방문, 전화상</u>
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,	<u>담, 출석</u>
아동학대행위자 및 관계인은	
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	
라야 한다.	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③ 제1항에 관하여는 「행정조	3
사기본법」 제4조, 제5조, 제9	
조, 제10조, <u>제17조</u> , 제21조를	<u>제11조, 제17조</u>
준용한다. 이 경우 "행정조사"	
는 "제1항에 따른 아동학대전	
담공무원의 조사"로, "행정기	
관"은 "시·도 또는 시·군·	
구"로, "조사대상자"는 "아동학	
대행위자 및 관계인"으로 본다.	